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849호

도시관리계획(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
- 동작구 노량진동 54-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-

1.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4-1 외 8필지(54-3, 54-4, 54-5, 54-7, 54-13, 54-17, 54-19, 62-25)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3월 28일
서울특별시장

I. 열람 기간: 2019. 3. 29.~2019. 4. 11.

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(☎02-2133-6297)

I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 정	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노량진동 46 일원	87,123 (1,335.38)	-	87,123 (1,335.38)	1996.11.20. (서울시고시 제1996-317호)	

※ 항목 중 ()의 숫자는 노량진동 54-1외 8필지(54-3, 54-4, 54-5, 54-7, 54-13, 54-17, 54-19, 62-25)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

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 계		87,123	—	87,123	100.0	
주거지역	소 계	10,990	—	10,990	12.6	
	제1종일반주거지역	10,490	—	10,490	12.0	
	제3종일반주거지역	500	—	500	0.6	
상업지역	소 계	76,133	—	76,123	87.4	
	일반상업지역	76,133 (1,335.38)	—	76,123 (1,335.38)	87.4	

※ 항목 중()의 숫자는 노량진동 54-1외 8필지(54-3, 54-4, 54-5, 54-7, 54-13, 54-17, 54-19, 62-25)에 대한 역세권
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

2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규 모			비 고
				연장(m)	폭(m)	높이(m)	
신 설	소로 3-7	국지도로	노량진동 53-13	27	6	6	입체적 도시계획시설 ^{주1)}

주1)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가.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기 정

가구 번호	획지 번호	위치		면적 (㎡)	계획내용	비 고
		법정동	지번			
A	1	노량진동	27-11,12,16,28-2,6,7,8,10,11, 29-3,5,6,7,8,10,11, 12,29,31-3	1,496	획지선지정	
B	2	노량진동	27-3,5,10,17, 31-2,15,18, 32-2	1,383	획지선지정	
B	3	노량진동	24-66, 26-6, 40-100, 41-4, 41-27, 27-2	3,053	획지선지정	
C	4	노량진동	41-9,11,14,23,24,28,29, 34-1,2,5, 40-31	1,067	획지선지정	
C	5	노량진동	40-3,16,28,30,3233,34,35,38,39,40,42,43,45,46,47,52,66,67,68,69,70,71,72,73,74,75,76,78,79,80,81, 41-5,29,30	2,805	획지선지정	
E	6	노량진동	40-14,96, 42-11	2,737	획지선지정	
E	7	노량진동	42-6,7,14,43-17,45-14,17, 24,31,46-6	4,933	획지선지정	
E	8	노량진동	43-5,6,7,16,17, 44-11,12,16,18,23, 45-27,28,33, 62-12	925	획지선지정	
E	9	노량진동	45-3,5,6,7,8,9,11,12,29,30,42	745	획지선지정	
F	10	노량진동	47-2, 45-31, 46-6	8,382	획지선지정	동작구청
G	11	노량진동	54-1,3,4,5,6,7,13, 62-7,11,23,29, 63-9,11	1,868	획지선지정	
G	12	노량진동	62-8,22	384	획지선지정	
G	13	노량진동	54-8	193	획지선지정	
G	14	노량진동	54-11,14,20,56-32	629	획지선지정	
G	15	노량진동	56-1	2,541	획지선지정	KTF
H	16	노량진동	57-1, 56-40, 60-27, 62-24	3,820.4	획지선지정	한국보건 산업연구원
H	17	노량진동	58-2, 59-8,9,10,29,30,32,33,34,35,43,41,44, 70-16,71-4	1,435	획지선지정	
I	18	노량진동	71-2,5,6, 72-18,22,23,24,25,26,47,51	1,182	획지선지정	이데아빌딩
I	19	노량진동	62-19, 70-10,12,27, 72-3,16,17,34	492	획지선지정	
I	20	노량진동	70-15, 72-57, 73-1,3, 75-2	887	획지선지정	
I	21	노량진동	62-20,26,70-19,20,28, 72-35,37,38,56,58,61,63	4,572	획지선지정	동작경찰서
I	22	노량진동	72-48, 100-1, 113-8	1,801	획지선지정	
J	23	노량진동	114-5	1,523	획지선지정	
J	24	노량진동	116-2	2,168	획지선지정	획지25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(권장)
J	25	노량진동	90-1,8,11, 91-1, 119-1,64,166,237	771	획지선지정	획지24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(권장)

■ 변경

가구 번호	획지 번호	위치		면적 (㎡)	계획내용	비 고
		법정동	지번			
A	1	노량진동	27-11,12,16, 28-2,6,7,8,10,11, 29-3,5,6,7,8,10,11, 12,29, 31-3	1,496	획지선지정	
B	2	노량진동	27-3,5,10,17, 31-2,15,18, 32-2	1,383	획지선지정	
B	3	노량진동	24-66, 26-6, 40-100, 41-4, 41-27, 27-2	3,053	획지선지정	
C	4	노량진동	41-9,11,14,23,24,28,29, 34-1,2,5, 40-31	1,067	획지선지정	
C	5	노량진동	40-3,16,28,30,3233,34,35,38,39,40,42,43,45,46,47, 52,66,67,68,69,70,71,72,73,74,75,76,78,79,80,81, 41-5,29, 30	2,805	획지선지정	
E	6	노량진동	40-14,96, 42-11	2,737	획지선지정	
E	7	노량진동	42-6,7,14,43-17,45-14,17, 24,31,46-6	4,933	획지선지정	
E	8	노량진동	43-5,6,7,16,17, 44-11,12,16,18,23, 45-27,28,33, 62-12	925	획지선지정	
E	9	노량진동	45-3,5,6,7,8,9,11,12,29,30,42	745	획지선지정	
F	10	노량진동	47-2, 45-31, 46-6	8,382	획지선지정	동작구청
G	12	노량진동	62-8,22	384	획지선지정	
G	13	노량진동	54-8	193	획지선지정	
G	14	노량진동	54-11,14,20,56-32	629	획지선지정	
G	15	노량진동	56-1	2,541	획지선지정	KTF
H	16	노량진동	57-1, 56-40, 60-27, 62-24	3,820.4	획지선지정	한국보건 산업연구원
H	17	노량진동	58-2, 59-8,9,10,29,30,32,33,34,35,43,41,44, 70-16, 71-4	1,435	획지선지정	
I	18	노량진동	71-2,5,6, 72-18,22,23,24,25,26,47,51	1,182	획지선지정	이데아빌딩
I	19	노량진동	62-19, 70-10,12,27, 72-3,16,17,34	492	획지선지정	
I	20	노량진동	70-15, 72-57, 73-1,3, 75-2	887	획지선지정	
I	21	노량진동	62-20,26,70-19,20,28, 72-35,37,38,56,58,61,63	4,572	획지선지정	동작경찰서
I	22	노량진동	72-48, 100-1, 113-8	1,801	획지선지정	
J	23	노량진동	114-5	1,523	획지선지정	
J	24	노량진동	116-2	2,168	획지선지정	획지25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(권장)
J	25	노량진동	90-1,8,11, 91-1, 119-1,64,166,237	771	획지선지정	획지24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(권장)

■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계획내용	결정(변경)사유
G	• 획지선 지정 해제 - 획지번호 : 11 - 지번 : 54-1,3,4,5,6,7,13, 62-7,11,23,29, 63-9,11 - 면적 : 1,868㎡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신설에 따른 획지선 지정 해제

나. 공동개발 지정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■ 기정

가구 번호	획지 번호	위치		면 적(㎡)	계획내용	비 고
		법정동	지번			
I	-	노량진동	81, 82	531	공동개발지정	
I	-	노량진동	72-40, 68, 69	302	공동개발지정	
F	-	노량진동	37-1,4,6,7,15, 39-13,14,39	923	공동개발지정	역세권 청년주택

■ 변경

가구 번호	획지 번호	위치		면 적(㎡)	계획내용	비 고
		법정동	지번			
I	-	노량진동	81, 82	531	공동개발지정	
I	-	노량진동	72-40, 68, 69	302	공동개발지정	
F	-	노량진동	37-1,4,6,7,15, 39-13,14,39	923	공동개발지정	역세권 청년주택
G	-	노량진동	54-1, 3, 4, 5, 7, 13, 17, 19, 62-25	1,335.38	공동개발지정	역세권 청년주택
G	-	노량진동	62-7,11,23,63-11	292	공동개발지정	

■ 공동개발 지정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계획내용	결정(변경)사유
G	• 공동개발 지정 - 지번 : 노량진동 54-1,3,4,5,7,13,17,19, 62-25 - 면적 : 1,335.38㎡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
	• 공동개발 지정 - 지번 : 노량진동 62-7,11,23,63-1 - 면적 : 292㎡	• 54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획지선 해제(G11)로 동일인 소유부지의 계획적 관리 위해 공동 개발 지정
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가.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■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지정용도	비 고	
노량진동 54-1, 54-3, 54-4, 54-5, 54-7, 54-13, 54-17, 54-19, 62-25	• 공동주택(주거복합) 주1)	가	역세권 청년주택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.

■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

구 분	계획내용	결정사유
-	• 지정용도 신설 - 공동주택(주거복합)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정용도 신설

나.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구 분	기정	변경	비 고
불허용도	간선부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※ 단, G가구 12획지(62-8, 62-22번지)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를 추가함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 시설 중 단란주점(바닥면적 150㎡ 미만), 안마시술소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※ 단, G가구 12획지(62-8, 62-22번지)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를 추가함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(주거복합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 시설 중 단란주점(바닥면적 150㎡ 미만), 안마시술소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	A 노량진동 54-1 외 8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	이면부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	

※ 불허용도 적용범위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

■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계획내용	결정(변경)사유
-	- 불허용도(간선부) 계획내용 변경 - 지정 :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- 변경 :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(주거복합 제외)	-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불허용도 (간선부) 계획내용 변경 - 노량진동 54-1 외 8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
다.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기정	변경	비 고
권장 용도	간선부 (전층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	좌동	1
	이면부 (전층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(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), 학원 및 독서실(당해용도 바닥 면적 500㎡ 미만인 것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	좌동	2

※ 권장용도의 인정 :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의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 (주차장 제외) 합이 20%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

라.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■ 건폐율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건 폐 율	비 고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60% 이하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호

■ 용적률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- 용적률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기본용적률	상한용적률	비 고
기정	• 간선도로변 (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 등)	300% 이하	630% 이하	-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	
	• 이면도로변 (15m이하 도로)	250% 이하	500% 이하	-		
변경	• 간선도로변 (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 등)	300% 이하	630% 이하	-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	
	• 이면도로변 (15m이하 도로)	250% 이하	500% 이하	-		
	• 노량진동 54-1외 6필지 (54-1, 54-3, 54-5, 54-13, 54-19, 62-15)	-	-	900% 이하	1,075.5% 이하	•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• 역세권 청년주택

주1)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 기 결정된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 산출

- 상한용적률 산정식 : 기본용적률 $\times(1+1.3\times\alpha\times\text{가중치})$
 - α :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면적/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
 - 가중치 :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/사업부지 용적률
- 상한용적률 산정
 - $900 \times (1 + 1.3 \times 0.15 \times 1) = 1,075.7\%$
 - ※ $\alpha : 181.94 / 1,153.44 = 0.15$
 - ※ 가중치 :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/사업부지 용적률

- 용적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계획내용	결정(변경)사유
-	• 용적률(변경) - 기정 : 기준용적률 300%이하 허용용적률 630%이하 - 변경 : 기본용적률 900%이하 상한용적률 1,075.5%이하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따른 운영기준 준용

■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최고높이	비 고
최고높이	• 간선도로변(노량진로, 장승배기길)	90m이하	
	• 만양로변, 동작경차로	50m이하	
	• 이면도로변	40m이하	

마. 용적률 완화항목에 대한 계획(의무사항)

사업조건 항목		적용기준	계획내용	완화 내용	비 고
공공 기여율	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	• 공공기여율 12%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	• 공공임대주택 부지 제공면적 : 140.88㎡(12.21%) - 140.88㎡(12.21%) ≥ 138.41㎡(12.00%)	기본 용적률 900% 부여	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(노량진동 54-1 외 8필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)
건축물 용도 구분	비주거 비율	• 비주거비율 10%이상 20%미만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• 비주거비율(용적률기준) : 10.36%(1,269.55㎡)		
주택 건설 비중	주택규모	• 공공임대주택 : 전용 45㎡이하 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: 전용 60㎡이하	• 주거 : 비주거 (용적률기준) - 10,990.61㎡(89.64%) : 1,269.55㎡(10.36%) • 공공임대 : 공공지원민간임대 = 14.20% : 85.80% (43세대) (256세대) • 공공임대주택 : 전용 19.92㎡, 38.18㎡계획 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: 전용 19.92㎡, 22.22㎡, 36.42㎡, 38.18㎡, 48.36㎡계획		
건축물 형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•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효율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	• 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		
주민 공동 이용 시설	커뮤니티 시설	•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㎡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	• 지상 1층에 100.74㎡ 계획	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에 따라 인센티브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함

※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,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~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(개정 2018. 12. 26) 준용

바. 공공기여계획

구분	기본용적률	상한용적률	공공기여율	계획내용	비 고
일반 상업 지역	900%	1,075.50%	부지 면적의 12% 이상 ^{주1)} (138.41㎡ 이상)	•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면적 : 140.88㎡(12.21%) - 140.88㎡(12.21%) ≥ 138.41㎡(12.00%)	노량진동 54-1외 8필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

주1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2 적용

※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

사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적용대상		건축 한계선	벽면 한계선	비 고
기정	간선 도로변	노량진로, 장승배기길	3m	-	• 보도형 조성(간선부 보행구간 확보)
	이면 도로변	6m 도로변	1m	-	• 보행공간의 안전 및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추가
		8m미만 도로변	1~2m	-	• 차도형 조성(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)
		이투스학원 이면부통로	4~6m 미만	-	• 차도형 조성(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)
		KTF이면부고시원 밀집지 일대	1m 미만	-	• 차도형 조성(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)
		만양로 신한은행 이면부 일대	1m	-	• 보차혼용형 조성(이면부 보행 및 차도 구간확보)
		공공보행통로 조성부분	-	3m	• 보도형 조성(노량진동 56-9 일대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)

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대지내 공지 및 통로 : 변경

구 분		적용대상	계획내용	비 고
쌈지형 공 지	기정	보행통로 및 가각부	26개소	
	변경	보행통로 및 가각부	26개소	• 노량진로와 장승배기로 교차가각부에 있는 쌈지형 공지(1개소) 위치조정(역세권 청년주택내)

2.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: 변경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차량출입 금지구간	• 간선변 가각부 및 주요전면도로변(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)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• 교차로에 면한 대지(획지)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	• 간선변으로의 차량 직접출입 규제로 안전한 교통소통 및 차량흐름의 효율성 상승 도모
보행자 우선도로	• 동작구청과 대성학원 사이의 이면도로를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제고를 위해 동서방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(폭원6m) • 노량진로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계획의 보행녹지축을 연결 하는 이면도로 2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(폭원 6m, 8m) • 만양로 이면도로변의 보행자를 위주로 한 통행체계 확립	•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쾌적한 통행공간 확보 및 차량과 보행자의 조화로운 소통 유도 • 주요지역 및 이면도로체계와 보행흐름 연계
보차 혼용통로	• 노량진동 40-31일대의 획지단위 개발시기에 따른 맹지발생 방지를 위해 한시적 보차혼용 통로 운영 • 노량진동 116-2일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하여 8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 • 노량진동 57-1일대의 노량진로와 이면도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6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	• 노량진로, 만양로 및 이면도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차량과 보행자의 보다 원활한 통행 유도

가. 차량출입금지구간 : 변경

가구번호		계획내용	비고
A		차량출입금지구간	
B		차량출입금지구간	
C		차량출입금지구간	
E		차량출입금지구간	
G	기정	차량출입금지구간	
	변경	차량출입금지구간 일부구간 해제	역세권 청년주택 주출입구
H		차량출입금지구간	
I		차량출입금지구간	
J		차량출입금지구간	

나. 보행자 우선도로 : 변경없음

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IV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- 이하여백 -